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4. 11 선고 2023가합1035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신동인, 전현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4. 11.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2 내지 13, 16 내지 24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7,558,296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27,558,296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트, 요트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와 요트 관련 거래를 한 자이며, 피고는 C의 자녀이다.

나. C은 피고 명의 계좌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22. 6. 8.부터 2022. 10. 5.까지 총 24회에 걸쳐 727,558,296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22. 7. 5. 원고에게 요트 D(이하 ‘이 사건 제1 요트’라 한다) 및 요트 E(이하 ‘이 사건 제2 요트’라 한다)를 2022. 7. 15.까지 인도하되, 만약 이 사건 제1, 2 요트가 2022. 7. 31.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제1 요트에 관하여는 5억 8,000만 원을 2022. 8. 1.까지, 이 사건 제2 요트에 관하여는 일본국 통화 5,400만 엔을 2022. 7. 16.까지 각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반환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3040호로 C이 이 사건 각 반환약정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제1 요트의 구매대금 5억 8,000만 원과 이 사건 제2 요트의 구매대금 일본국 통화 5,400만 엔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C이 2023. 8. 30. 항소하였고 현재 부산고등법원 2023나5602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관련 민사판결에 기한 10억 8,600만 원[= 5억 8,000만 원 + 5억 600만 원(일본국 통화 5,400만 엔)]의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2022. 6. 8.부터 2022. 10. 5.까지 총 24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합계 727,558,296원을 증여받았다.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인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된 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에 기한 약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면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반환약정이 2022. 7. 5.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송금 중 별지 목록 순번1, 14, 15 기재 각 송금은 이 사건 각 반환약정 체결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약정금채권은 별지 목록 순번1, 14, 15 기재 각 송금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별지 목록 순번2 내지 13, 16 내지 24 기재 각 송금은 2022. 7. 7. 이후 이루어졌다. 그 당시 관련 민사판결에 기한 약정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반환약정이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약정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약정금채권은 별지 목록 순번2 내지 13, 16 내지 24 기재 각 송금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금전 수수의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금전을 주고받은 경위, 금전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전을 송금한 사람과 송금 받은 사람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송금한 사람과 송금 받은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무상으로 송금 받은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순번2 내지 13, 16 내지 24 기재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지급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송금은 C으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C은 2022. 7. 7.부터 2022. 10. 5.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717,558,296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만 21세인 피고가 7억 원이 넘는 돈을 아버지로부터 차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③ 피고는 위 돈을 C에게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반환하였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목록 순번2 내지 13, 16 내지 24 기재 각 송금이 피고가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 보기는 어렵고, C이 별지 목록 순번2 내지 13, 16 내지 24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각 증여가 이루어진 전체 기간 동안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C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C은 당시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별지 목록 순번2 내지 13, 16 내지 24 기재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717,558,2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주미소, 판사 정수호

별지